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u>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table><tr><td>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td></tr></table>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	현행과 같음 1. <삭 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table><tr><td>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삭제>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td></tr></table>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삭제>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삭제>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8호서식] 청소년·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유의사항 1. ~ 4. 생략 5. <신 설>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8호서식] 청소년·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유의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동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을 제한·금지 하고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 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table><tr><td>처리기간</td><td>즉시</td></tr></table>	처리기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table><tr><td>처리기간</td><td>3일</td></tr></table>	처리기간	3일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간	3일				